

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

결 정

대상자 이을

주 소 서울 *** ***** ***-* *****

주 문

본 위원회는 현대 N 페스티벌 대회, 모닝 챌린지 클래스에 참가한 #11 번 이을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대상자의 지위

대상자는 사단법인 대한자동차경주협회의 레이스 선수 라이선스 B 를 소지한 회원이다.

2. 해당 대회 심사위원회의 당시 결정

해당 대회의 심사위원회는 2019년 7월 14일 항소자인 #11 이을 선수의 의견을 청취하였고 해당 대회 기술위원회의 보고서를 심의하여 2019 KSF 모닝 챌린지 기술규정 제 6조 2항 1호를 근거로 #11 이을 선수에게 실격 판정을 하였다.

3. 적용 기준

본 항소위원회는 KARA 국내스포츠규정 제 13조에 의거하여, 항소위원회를 개최하였다. 본 항소위원회는 현대 N 페스티벌 대회 심사위원의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, 이와 병행하여 항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심사위원 1인과 해당 드라이버의 의견을 청취하였다.

4. 판단






본 항소위원회는 쟁점이었던 기술규정 제 6조 2항 1호의 “퓨즈 탈거” 조항은 퓨즈 박스에서 본래 장착되어 있던 지정 퓨즈가 제거되어야 하며, 제거된 장소에는 그 어떤 부가물도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판단하였다.

항소를 제기한 드라이버는 “ON/OFF 기능의 스위치는 퓨즈에 해당되지 않는다”고 주장하였으나 그 기능이 퓨즈를 탈거한 상태와 동일하더라도 퓨즈가 제거된 위치에 대회특정규정에 명시되고 승인되지 않은 부가물이 장착되어 있으므로 규정위반으로 판단된다.

따라서 본 위원회는 모닝 챌린지 기술규정 제 6 조 2 항 1 호에 근거, 항소를 제기한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#11 번 이율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019. 7. 30.

(사)대한자동차경주협회 항소위원회

위원장	황 태 영	(인) 
위 원	공 준 덕	(인) 
위 원	김 광 진	(인) 
위 원	김 덕 호	(인) 
위 원	심 상 학	(인) 

첨부 1 (대회심사위원회 결정)



심사결정문 (No. 12)

발신 : 심사위원회

날짜 : [7월 14일]

수신 : #30, #60, #79, #11

시간 : [16시 20분]

본 심사위원회는 기술위원장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검토하고, 드라이버의 의견을 청취한 후,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.

클래스 / 드라이버 / 엔트리 번호 : 모닝 챌린지 / 김병수,신광균,최현섭,이율 /
#30, #60, #79, #11

팀 :

발생시간 : 시 분

세 선 : [연습/예선/결승]

내 용 : 에어백 퓨즈 미탈거

위 반 : 모닝 챌린지 기술규정 6조 2항 1호

판 정 : 실격

사 유 : 결승 경기 후 검차 시 에어백 퓨즈 미탈거 확인

심사위원장

심사위원

KARA심사위원

장성국

이영배

김상덕



RECEIVED Secretary of
the Meeting
Log N: 68-1/6
at: 16 h 35 m

첨부 2 (모닝 챌린지 기술규정 제 6 조 2 항 1 호)



- DRUM 8 INCH (품번: 58310-G6000 / 58360-G6000 / 58350-G6A00)

5.6. 스프링

5.6.1 KSF 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.

제 6 조. 허용

6.1, KSF 모닝챌린지레이스 규정에 의거, 아래의 내용이 허용된다.

6.2. 탈거

6.2.1. 퓨즈

- [에어백 퓨즈] 탈거를 의무화 한다.

- 탈거된 에어백 퓨즈는 경기 종료 후 반드시 재장착하여야 하며, 그 실행과 책임 의무는 선수 본인에게 있다.

6.2.2. 트렁크 내부의 스페어타이어 및 그 덮개와 공구 종류 등

6.2.3. 주행성능과는 무관한 일부 부품 등

- 차량 중량 감소 목적으로 2 열 공간의 시트 탈거를 허용한다.

- 대회참가를 위해서 긴급수리를 시행하는 상황에서, 주행성능과는 무관한 일부 부품이 사고로 인해 장착 불가능인 경우, KSF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상태로 대회 출주할 수 있다.

6.3. 장착

6.3.1. 주행영상 저장장치 / 주행정보 수집장치

- 해당 제품의 제조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장착할 수 있으며 그 적합성에 대한 판단은 KSF의 권한이다.

6.3.2. 롤케이지에 안전을 위한 보호 패딩을 장착할 수 있다.

6.3.3. 제 5 조 의무장착 제품을 제외한 상위트림의 순정부품 장착을 허용하며, 이에 대한 판단은 KSF의 권한이다.

6.3.4. Tuon 2017 을 뉴모닝 제품 장착을 허용한다.